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26
----------	-------

발의연월일 : 2026. 7. 23.

발 의 자 : 김선교 · 김상훈 · 김미애
이헌승 · 김대식 · 박수민
윤상현 · 최수진 · 박덕흠
안철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설립일부터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의 적용을 5년간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음. 이후 특례 종료 시 조합의 경영 악화와 이에 따른 조합원 및 농업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과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을 각각 5년씩 연장하였으며, 현행 특례는 2027년 3월 1일 만료될 예정임.

한편, 현행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조합에 대하여 방카슈랑스 모집비중 제한을 적용하고 있고, 이는 2011년 당시 「보험업법 시행령」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후 경제 규모와 규제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다른 자산규모 기준 법령의 상향 조정과 달리 10년 이상 조정되지 않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그 결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조합은 2012년 1개에서 2026년 33개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기준은 조합의 성장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 적용 배제 특례를 5년 연장하여 농촌과 농업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자산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보험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5조제1항·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020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5조제1항 중 “2027년 3월 1일”을 “2032년 3월 1일”로, “제16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부칙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7년 3월 1일”을 “2032년 3월 1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조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모집총액 중 다음 각 호의 비율을”을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로 하며, 같은 부칙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법 시행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조원
2. 2029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4조원
3. 2032년 1월 1일 이후: 5조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1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설립된 날부터 <u>2027년 3월 1일</u>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② (생략) ③ 조합은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u>2027년 3월 1일</u>까지 「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u>2조원</u>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 ----- ----- -----<u>2032년 3월 1일</u>----- -----<u>제29조제2항</u>-----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2032년 3월 1일</u>----- ----- ----- ----- ----- -----<u>다음 각 호</u> <u>의 구분에 따른 금액</u>----- -----

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은 각각 해당 조합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1년까지: 100분의 100
2.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까지: 100분의 85
3.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3년까지: 100분의 70
4.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4년까지: 100분의 55
5.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4년이 지난 날부터 5년까지: 100분의 40
6.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

----- 모
집총액의 100분의 25를 -----
-----.

1. 이 법 시행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조원
2. 2029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4조원
3. 2032년 1월 1일 이후: 5조원

<u>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5년이</u> <u>지난 날부터 15년까지: 100분</u> <u>의 25</u>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	----------------